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및 입법적 함의

##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김용기

한서대학교 교양교육원

Yong-Ki Kim(nova365@naver.com)

### 요약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문재인대통령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약으로 위원회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위원회의 필요성과 입법적 함의를 논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개념정립, 해외사례, 법률조사), 언론자료 및 인터넷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제시하였는데, 긍정적인 기능은 첫째, 정책의 안정성 둘째, 정치적 중립성 셋째, 교육의 본질 추구 넷째, 정책 가능성의 향상 부정적인 기능은 첫째, 기구설치가 독이 됨 둘째, 지위와 역할 논란 셋째, 합의적인 문제 넷째, 포퓰리즘정책 지향이다.

■ 중심어 : | 국가교육위원회 | 19대 대선 |

### Abstract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he committee was increased because of the pledge of the President Moon Jaein for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about its necessity and the meaning of legislation. The study method was to analyze existing studies (concept establishment, overseas cases, and legal research), media materials, and internet materials. It also suggested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Its positive functions are; first, stability of policy, second, political neutrality, third, seeking the nature of education, and fourth, improvement of possibility. Negative functions are; first, establishing the committee could be poison, second, argument in position and role, third, issue of agreement, and fourth, populism policy oriented.

■ keyword : |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 19th Presidential Election |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새로운 정부가 출범 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변화해 왔다. 대통령 임기중에도 교육정책은 자주 변경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에 국민들은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원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통령선거가 이루어졌다. 당초 2017년 12월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로 앞당겨졌고, 선거일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대통령과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교육부를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다. 원래 국가교육위원회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육」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모태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부의 독단적인 교육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자, 2011년 6개의 시·도교육감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후 2012년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이것을 받아들여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19대에 다시 출마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한 것이다. 2012년에는 문재인후보만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2017년 대선에서는 지지율 1·2위인 문재인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설치를 모두 주장함에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개념 정립과 해외 운영 사례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 문제 및 방법

### 가.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있는가?
- 둘째, 국가교육위원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가?
- 셋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입법적 함의는 무엇인가?

### 나. 연구 방법

첫째, 선행연구 분석이다. 연구문제가 설정되면 내용을 토대로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개념 정립, 해외사례 법률 자료분석이다.

둘째, 매스컴자료 분석이다. 언론자료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인터넷자료 분석이다.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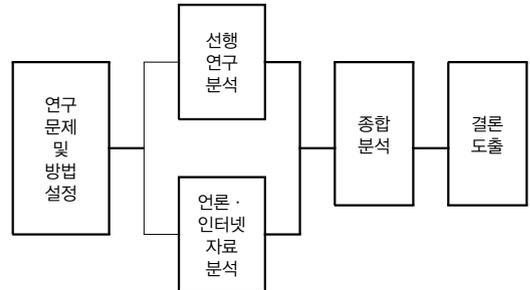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절차도

## II.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

국가정책수행은 일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책이 변화되고, 정책 변경이 잦았다. 이러한 정책의 변경은 일관성 및 타당성도 잃고, 국민들에게 신뢰도 없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근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지역교육청과 정부와의 갈등이다. 어떤 상황이나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고, 각기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관 또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이다. 결국 정책의 민주성도 상실되고, 신뢰성이 상실되므로 이는 곧 정책 실패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최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확인 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를 다시 만들겠다고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의 논의가 거치지 않고 급속도로 시행되었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되면 사교육이 억제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확실히 건설될 것이라는 게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해서 ‘공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축소내지 폐지되었다. 정부정책을 믿고 준비한 학생과 학부모는 대입 전형이 바뀌에 따라서 허탈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학생의 기초학력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교육계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책이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슬그머니 정책을 부분적으로 폐지하였다.

또한 정부는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미래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서 대학구조개혁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은 학교의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성과가 없다.

작년에 시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사항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역사계, 교육계에서조차 반대한 국정교과서추진 사항에 대해 정부는 귀를 닫고 추진하였다. 역사바로잡기라는 미명아래 시행된 정책이지만 역사왜곡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작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여 공부하는 학교는 없다. 또한 선정한 연구학교 1곳마저도 법정싸움에 휘말려 채택을 미룬 상태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여 갈등만 키운 것이다. 국민을 멀리하고, 대통령 눈치에 익숙한 장관과 정책관료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시행된 졸속한 교육정책은 수없이 많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과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정책추진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관료의 출세 지름길인 까닭이다. 또한 정책이 실패하여서 피해자가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관료는 책임추궁이 없고, 면죄부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의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정책 추진에 대하여 소수의 정책 관료에게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의 정책관료가 다수인 국민의 의견을 청취 및 논의를 거치지 않아 일관성 및 타당성, 민주성이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논의를 거쳐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주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에 대

하여 큰 장점이 있고 이에 따라서 설치에 대한 필요성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III. 외국 사례 및 기능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면서도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이 서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 개혁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 관료와 전문가에게 교육정책이 독점되어서 또다시 우리의 교육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교육은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을 위한 인기위주의 교육정책은 지양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러 내용을 토대로 외국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외국 사례[1][2]

각 당의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외국 사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행정적 위치와 권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적 위치와 권한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자문기구, 핀란드는 정책 집행의 행정기구, 미국은 권한이 막강한 헌법기구, 독일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표 1. 외국의 운영 사례

나라	기관명	권한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자문기관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행정기관
미국	주교육위원회	헌법기관
독일	논의 중	

#### 가.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

##### 1) 구성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는 우리가 이제까지 소개한 국가교육위원회에 해당한다. 일본은 중앙교육심의회령(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문부과학대신(우리의 교육부장관에 해당함)의 자문기구로 3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

다.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재임이 가능하다. 교육제도, 평생교육, 초·중등교육, 대학, 스포츠·청소년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분과위원의 소속도 문부대신이 결정한다.

2) 내용

5개 분과( 교육제도, 평생교육, 초·중등교육, 대학, 스포츠·청소년)를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회의 역할과 지위가 확대되면서 행정위원의 인선이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생겨서 ‘어용평의회’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치적 논란이 심함 문제 가령 교과서제도개선, 교원의 중립성 문제 등에 대하여 정부편에서 서서 자문하였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여러 방면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책을 점검해 나간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나.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

1) 구성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일반교육위원회와 직업교육위원회가 통합되어 이루어졌다.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산하 행정기구로 교육부는 정책 결정을 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집행을 담당한다. 즉 행정적인 기구로 구성되어있다.

2) 내용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는 통합기구이므로 교육과 직업훈련을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의무·후기중등), 직업교육 훈련자격 기준, 학력 평가 등을 관장하며, 12개의 국립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다. 미국의 주교육위원회

1) 구성

미국의 주교육위원회는 주 헌법기구이다. 17개주에서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나머지 주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간선제로 임명한다. 구성은 5-7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2) 내용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하여 국회가 존재한다면 미국의 주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집행을 견제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의 여러 분야의 집행에 대하여, 주교육위원회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라. 독일

독일은 연방제국가이다. 중앙과 주마다 대학입시 및 교육과정 등이 서로 다르므로 통일적인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이에 큰 틀에서 연방과 주의 교육정책을 연결하고 조정하여 자문하는 기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설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 기능

해외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교육위원회는 나라마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접목시켰을 때 기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자료 중심으로 기능을 분석·분류하였다[3-7].

가. 긍정적인 기능

첫째, 정책의 안정성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대부분이 헌법이나 법률이 아닌 장관령,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져서 쉽게 변경되어왔다. 이런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화하는 정책과 장관이 변경될 때 마다 변화하는 정책에 대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넘어갔다. 이에 미국의 헌법기관인 주교육위원회 운영과 그리고 펼치는 교육정책이 법률에 의거한다면 과거에 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건국이 후 한 번도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서 현행 교육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맞추어갔다. 국가교

육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정치로부터 100%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겠지만, 과거의 교육부와는 비교하여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교육의 본질 추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의 본질보다는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교육부장관과 청와대와의 소통 속에서 교육정책은 대부분 생성되었고, 또한 소통이 아니라 지시와 하달에 의하여 생성된 교육정책도 대부분이다. 지시와 하달의 교육정책은 과거 역사교과서에서 보았듯이 혈세 낭비와 국민적 갈등만 초래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교육위원회가 운영된다면 교육전문가 그룹이 한 번 더 숙고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과거에 비하여 보다 더 교육의 본질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정책가능성의 향상이다.

교육정책이 잦은 변경 사회요구와 외부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육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적응에 따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고 기간은 줄 필요가 있다. 집권기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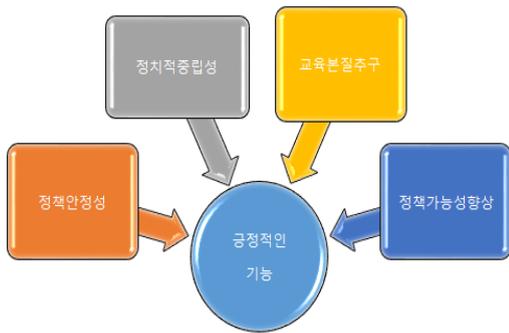


그림 2. 긍정적인 기능

나. 부정적인 기능

첫째, 기구설치가 독이 될 수 있다. 교육부의 정책추진의 문제로 다른 기구를 만들어 해결한다는 것은 자칫 독이 될 수 있다. 이 기구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는 또 다른 기구를 만들 것인가? 싶다. 교육부의 문제점을 개

선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기구 설치가 인하여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시간이 더디고, 논란의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다.

둘째, 지위와 역할의 논란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와 단체들을 살펴보면, 설치주장은 동의하나, 지위와 역할에서는 서로가 상이하다. 자문기구 성격부터 교육부 폐지를 통한 역할 대행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 사례에 보았듯이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현실에 맞는 위치와 권한을 구상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정치적으로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법률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합의적인 문제이다. 대부분이 주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방식은 다수결에 의한 합의방식이다. 충분한 토론과 절차 없이 단순 다수결에 의한 방식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바라는 의도와는 상반되는 상황이고 교육부의 정책집행과 다를 이유가 무엇인가 싶다. 이에 대한 정치적 합의와 법률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포퓰리즘정책을 지향할 수도 있다. 국가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진행할 때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 단점이 되었으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칫 중심체 구실이 부실할 경우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즉 국가교육위원회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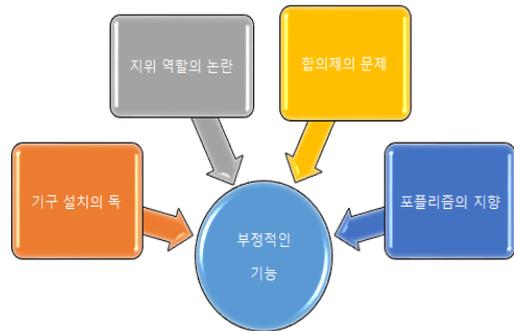


그림 2. 부정적인 기능

### IV. 입법적 함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은 헌법 31조 4항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다.

1949년 12월에 제정된 과거 「교육법」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한 ‘중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다.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30인으로 구성되었다. 과거 문교부장관이 정책을 대한 수정 및 변경에 대하여 중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다. 과거 교육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8].

표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교육법 규정[9]

제57조 국가교육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3조 중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교행정에 관한 제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2. 중요 문교정책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4.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요시책 6.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7. 하급위원회의 신청 또는 교육에 관한 청원에 관한 사항 8. 법령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4조 중앙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 시책에 관하여 문교부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5조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문교부장관이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근에 국회 입법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설치에 관한 법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국가교육위원회 발의 관련 법안 비교[10]

구 분	박홍근 (2016.07.22.)	안민석 외 10인 대표발 의(2016.07.22.)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적 지위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국가교육진흥 5개년 계획 수립·심의</li> <li>- 교육정책 조정·평가</li> <li>- 교육관련 제도 조사·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목표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국가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국가 교육정책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국가 교육 균형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교육 투자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li> </ul>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포함 15명을 대통령 임명: 국회선출 9명, 대통령 지명 4명, 교원단체 2명</li> <li>- 위원중 5명은 10년 이상 교원 경력자</li> <li>- 위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 거쳐 대통령 임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1명, 상임위원 5명 포함 15명을 대통령 임명: 국회선출 11명, 대통령 지명 4명</li> <li>- 위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 거쳐 대통령 임명</li> <li>-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위원장 위촉</li> </ul>
위원장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li> <li>- 국회 출석 의견 진술</li> <li>- 필요시 국무회의 출석</li> <li>-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 건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li> <li>- 국회 출석 의견진술, 보고·답변</li> <li>- 필요시 국무회의 출석</li> <li>-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 건의</li> </ul>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임기	-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li> <li>- 운영위에 분야별전문위원회 설치</li> <li>- 특별위에는 실무위원회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및 평생·직업교육위원회 등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li> </ul>
사무처 설치	-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	-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
타기관과의 관계	- 심의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 장, 교육감에게 통보	- 교육부 업무집행전 위원회 심의·의결 거침 - 위원회 의결시 교육부장관 보고
검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li> <li>-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직</li> <li>-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li> </ul>

두 의원이 발의한 기구의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한 내용이다. 박홍근의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있고, 안민석의원은 독립기구형태를 띄고 있다. 기구의 법적지위는 중요하다. 정책결정 수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상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민석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조직기구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기구 설치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권한은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부처를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교육부의 권한 축소와 위상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정책의 일관성, 안정성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를 주장한다면 안민석의원이 제안한 독립기구의 형태가 우리가 논의한 내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한국은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구가 명목상은 독립적기구이나, 정부당국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몇가지 전제조건이 따라줘야한다. 첫째, 임명이나 선출 방식에 따라서 정책당국자와 종속관계내지 동료관계가 될 수 있다. 어떠한 임명방식을 가지더라도 투명하고 중립적, 독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권한과 업무범위의 한정이다. 자칫 기구위에 기구가 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안정성, 교육문제해결, 정책당국자와의 간섭 배제 등을 원칙적으로 하고, 이러한 상황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비효율적인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결과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입법이 이루어졌을 때 국가교육위원회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정책을 시원하게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여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유력대선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자문기구, 핀란드의 행정기구, 미국의 헌법기구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가교육

위원회는 설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치를 위해서는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구설치를 위하여 긍정적 기능을 쫓으면서 우려하는 부정적 기능도 참고하여야 한다. 긍정적기능만 쫓다보면 자칫 부정적 기능에 대하여 간과하는 수가 있다. 이에 대비책을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잘 응용해야 할 것이다. 자칫 시간이 촉박하여 고민 없이 설치하다보면 설치에 대한 무용론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협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기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여당내 협치와 야당과의 협치가 이루어져야 기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것이다. 이런 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바뀌면 다시 존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당과 교육계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마치 모든 교육 현안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계해야할 점이다.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과 잦은 변경의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정책이 우선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목적지를 변경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여론을 무시한 교육정책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갈등과 혈세 낭비는 모두 국민이 떠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역사교과서, 교원평가, 대학입시 등).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를 하는 기구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문제점과 우려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공약이니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와 여론을 모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구의 법적인 차원, 법적지위 및 위임에 관한 차원 등 여러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용일, 국가교육위원회 제도설계를 위한 시론, pp.8-9, 2016.
- [2] 김형태, 대한민국 교육 살릴 ‘국가교육위원회’ 절실하다, 국회토론회, p.63, 2016.
- [3] <http://21erick.org/bbs/board.php?>, 이창승, 교육을 꿈꾸는사람들, 교육부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주장, 타당성있는 애긴가?, 2017.
- [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 조선일보, 국가교육위원회에 거는기대, 2017.5.18.
- [5] <http://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교육계 소원 1순위 ‘국가교육위원회’ 2017.3.25.
- [6] <http://www.g-enews.com/view.php?>, 오피니언, 국가교육위원회 의결기구화, 교육부 폐지주장을 비판한다, 2017.3.8.
- [7] 박남기,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략 및 방안-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학술대회, pp.3-25, 2016
- [8] 김용일, 국가교육위원회 제도설계를 위한 시론, 경기도교육청 공청회, pp.8-9, 2016.8.9.
- [9] [www.law.go.kr](http://www.law.go.kr), 2017검색.
- [10] 박남기,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략 및 방안-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학술대회, pp.3-25, 2016
- [11] 이근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체제개선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pp.588-599, 2016.
- [12] 이성균, “유럽연합의 경제위기속에서 평생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2권, 제6호, pp.518-529, 2012.
- [13] 배영권, “이토이즈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2012한국콘텐츠학회 춘계학술대회, pp.369-370, 2012.

저 자 소 개

김 용 기(Yong-Ki Kim)

정회원



▪ 현재 : 한서대학교 교양교육원 연구조교수

<관심분야> : 교육정책, 통일교육